

제352회 정례회
2016. 12. 5.(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1) 11월 2일 회부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1)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10월 31일
-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2일

3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
 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3조에 의거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(2015.7.24.)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으로 운영되므로 관련조항을 개정함.

4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2조를 적용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·운용함(안 제2조)
-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를 준용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여유자금을 별도로 운용·관리함(안 제20조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를 준용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함(안 제22조)
- 기금의 회계관직을 지정함(안 제23조)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24조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검토

-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에 따라 설치되어 지금까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어 왔음.
- 그러나, 지역개발기금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른 기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2조가 개정(시행일 2017. 1.1)됨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적용을 받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발생함.

<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내용>

현 행	개 정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기금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<u>다만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.</u>	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기금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15.7.24.> (시행일 2017. 1.1)

- 동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며, 지역개발기금 조성 현황은 아래와 같음.

<지역개발기금 조성 현황>

2016년도 말 조성액 [㉠]	2017년도 조성계획			2017년도 말 조성액 [㉡] = [㉢] + [㉠]
	수입 [㉢]	지출 [㉣]	증감 [㉤] = [㉢] - [㉣]	
379,531,800	260,044,171	137,610,290	122,433,881	501,965,681

※ 자료 :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나. 주요 내용 검토

- 안 제2조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에 따라, 특별회계 설치, 운영조항을 삭제하고,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근거 법령을 기존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3조 규정 적용에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르도록 변경한 것으로 타당함.
- 안 제3조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조에 따라 규정한 관리자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 및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따라 기금 운용심의를 담당하는 통합기금관리관(現 기획관리실장)과 동일한 바, 별도 관리자를 둘 필요성이 없는 관계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함.
- 안 제4조(기금의 재원)은 현재 기금 폐지로 인해 재원조성 기여가 없는 ‘상·하수도 지원금고 기금’ 등을 삭제하고, 재원 조성에 기여도가 큰 순서로 재배치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안 제15조(용자대상)는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이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충청북도의 현실과 괴리된 사업들이 있는 바, 이 중 도 대상사업위주로 명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안 제17조 제2항 및 안 제23조는 상위법령에 하위규정의 적용을 규

정한 것으로 법령 위계상 적절치 않은바 이를 삭제 및 개정한 것으로 타당함.

- 안 제20조의 제4항은 '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'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, 해당사업에 필요 시 즉시 용자가 가능토록 여유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지역개발기금의 특성에 의거,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의 단서에 따라 별도 운용·관리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, 법적 문제는 없음. 다만 수시용자를 실시함에 있어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.

※ 지역개발기금 수시용자 사례

- 충주시의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당초 용자신청에 따라 70억원을 용자('16.6월)하였으나, 입주기업들의 산업용지 추가 요청에 따른 충주시의 30억 추가용자 신청이 접수('16.10월)되어 12월 중 용자금 교부 예정임.
- 안 제22조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,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24조는 기금운용과 관련해 기존 '도정조정위원회'의 심의를 받던 것을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따라 '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'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음.
다만, 조 제목 및 내용에 사용된 '기금운영' 용어는 조례 사용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 '기금운용'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부칙 제1조 시행일은 개정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시행일에 맞춰 2017년 1월 1일로 규정함.

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3조에 의거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예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으로 운영되므로 관련조항을 개정한 것으로, 검토 결과 내용 및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